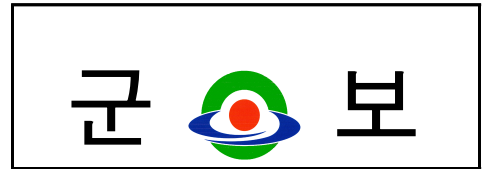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46호 2020. 9. 3.(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0-1111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09월 03일

예 천 군 수

1. 제안(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공용 시설물 관리 비용의 지원 기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된 기준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범위의 구체화 및 지원 기준 규정 (안 제6조)

○ 사업 지원 범위의 구체화

- 현행 : 5개 사항
- 개정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11개 사항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2개 사항

○ 사업 지원에 대한 기준 규정

- 10년 경과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 공동주택 총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총 사업비의 60~90% 이내 지원)

-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신청 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총 사업비의 50~90% 이내 지원)

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규정 (안 제6조2)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규정 (안 제7조2)

- 군수는 매년 2월 말일까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계획 수립 및 공고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모사업 계획서 제출

라.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사업의 착수 절차 규정 (안 제7조의3)

- 착수기간 : 보조금 지원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착수 즉시 군수에게 사업착수보고서 제출

마.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집행에 필요한 검사 및 구비서류 규정 (안 제10조)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서류 및 장부 검사 가능
- 보조금 지출 증명 서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제출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건축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 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전화 : 054-650-6352, 팩스 : 054-650-6359
- 전자우편 : iciscoo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2장의 제목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을 “공동주택의 지원”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군수”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를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 유지·보수
2. 상·하수도시설의 유지·보수(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3.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4.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보수
5.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차단기의 보수·설치
6.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설치 및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개선

7. 옥외 지상주차장의 유지보수, 지하주차장 비상벨 설치 및 재난 안전표지 판 유지·보수
8. 어린이놀이기구, 비영리 목적의 주민운동시설, 공동 화장실의 보수
9.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등 유지관리비
10. 주민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앱(App)구축 운영
11.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세대수 300 미만인 단지 :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2. 총 세대수 300 이상 500 미만인 단지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3. 총 세대수 500 이상 1000 미만인 단지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4. 총 세대수 1000 이상인 단지 : 총 사업비의 60% 이내 지원

③ 군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2.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신청 시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2. 2회차 신청 시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3. 3회차 신청 시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4. 4회차 신청 시 총 사업비의 60% 이내 지원
5. 5회차 이상 신청 시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되고 20세대 이상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의 제목 “(지원절차)”를 “(관리비용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입주자대표에게통보”를 “입주자대표에게 통보”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공동체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공모계획을 수립·공고한다.

② 제1항의 공모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공동

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2분의 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3. 공동체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4.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5. 기타 공모사업 모집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7조의3(사업착수) ① 군수로부터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신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하고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 예정시기 등을 포함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군수는”을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제6조제1항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6조제3항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검사의 거부 및 거짓 보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93조, 제99조 및 제102조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명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 중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을 “별지 제5호서식의”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서면”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사업명	소요예산			사 업 내 용	비 고
	계	보조금액 (신청액)	자 체 부담액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부.
2.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법 및 공정표 1부.
5. 설명이 첨부된 현황사진 제출(한글파일의 사진대지)

【별지 제1호의2서식】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서

공고사업명		20 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신청단지	단 지 명		동 수	
		주 소		세 대 수	
		입 대 의 의 결 일		사 용 검 사 일	
		공 동 체 활 성 화 단 체 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사 업 예 산	총사업비	보조금(신청사업비)		자 부 담	
	천원	천원(%)		천원(%)	
20 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모집공고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서명/날인) 공동체활성화단체 회장 : (서명/날인) 관리사무소 소장 : (서명/날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공모사업 제안단체 소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사본 1부. 4. 자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1부. 5. 기타 공모사업 모집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사업착수보고서		
계약자	발주자	
	계약상대자	
계약내용	공사명	
	계약금액	
	총공사금액	
	계약보증금	
	착수년월일	
	준공예정일	
	기타사항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착수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관리사무소장 (인) (전화 :)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계약서 사본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사업명	소요예산			사 업 내 용	비 고
	계	보조금액 (신청액)	자 체 부담액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시공 전·후 현장사진 1부.
2.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확인서 1부.
3.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1부.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신청자	단 지 명		
	주 소		
정 산 내 용			
사 업 명			
정산금액	계		
	보조 금액		
	자체부담 금액		
공사 업체명(연락처)			
착 공 일		준 공 일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 리 사 무 소 장 (인) (전화 :)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공사완료확인서 및 준공내역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3. 공사 전·중·후 사진 4. 보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분쟁대상 건축물 현 황	위 치				면 적	m ²
	지 역		지 구		지 목	
	용 도		구 조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층 수	지상 층
	건 폐 율	%	용적율	%		지하 층
분쟁조정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 사유						
당사자간 협의진행사항						
첨부서류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조 정 안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예천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의결된 이 사건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공동주택관리 분쟁 각 당사자)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전화)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전화)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조정내용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위 대리인 (인)

위 피신청인 (인)

위 대리인 (인)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 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출 석 대 상 자	성 명	주소 또는 소속		자 격
				참고인 또는 당사자
출석요구일자	년 월 일 (:)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			
출 석 장 소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위와 같이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출석대상자) 귀하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서식】

의견제출서				
분쟁조정 신청내용				
당사자 (참고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의견				
기 타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종결(거부·중지)통보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또는 중지사유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을 종결(거부·중지)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공동주택관리 분쟁 각 당사자)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

대상단지	단 지 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주 소			
요 청 인 대 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동의현황	동의인수 (동의율)		전체세대수	
감사대상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사유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 • 제2호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제3호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제5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감사 요청 사항·내용	※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제외 대상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12호서식】

요 청 인 연 명 부

☐ 단 지 명 :

번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2장 <u>공동주택의 지원</u>
제2장 <u>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u> 제5조(지원범위) <u>군수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u>	제5조(지원범위) <u>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 <u>--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u> -----. <u><단서 삭제></u>
제6조(지원대상) <u>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u> 1. <u>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유지보수</u> 2. <u>상·하수도시설의 유지·보</u>	제6조(지원대상 등) ① <u>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u>

수(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3.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4. 지하주차장 비상벨 설치 및 재난 안전표지판 유지·보수

5.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 유지·보수

2. 상·하수도시설의 유지·보수(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3.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4.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보수

5. 방법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차단기의 보수·설치

6.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설치 및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개선

7. 옥외 지상주차장의 유지보수, 지하주차장 비상벨 설치 및 재난 안전표지판 유지·보수

8. 어린이놀이시설, 비영리 목적의 주민운동시설, 공동 화장실의 보수

9.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 친환경 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등 유지관리비

10. 주민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앱(App)구축 운

영

11.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세대수 300 미만인 단지 :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2. 총 세대수 300 이상 500 미만

인 단지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3. 총 세대수 500 이상 1000 미

만인 단지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4. 총 세대수 1000 이상인 단지

: 총 사업비의 60% 이내 지원

③ 군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

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

에 선정된 사업

2.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

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최초 신청 시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2. 2회차 신청 시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3. 3회차 신청 시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4. 4회차 신청 시 총 사업비의 60% 이내 지원

5. 5회차 이상 신청 시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제6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되고 20세대 이상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③ (생략)

④ 군수는 사업비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략)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

----- 별지 제1호 서식-----

-----.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입주자대표에게 통보-----.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공동체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공모계획을 수립·공고한다.

② 제1항의 공모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 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서
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
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공동주
택의 전체 입주자의 2분의 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3. 공동체활성화 단체 구성신고
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4.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5. 기타 공모사업 모집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7조의3(사업착수) ① 군수로부터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
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

신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한다)하고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 예정시기 등을 포함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주택관리 지원심사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천군공동주택관리 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제8조(공동주택관리 지원심사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

둔다.

② ~ ⑨ (생략)

제10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는 사업완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신설>

<신설>

---.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0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제6조제1항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6조제3항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검사의 거부 및 거짓 보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93조, 제99조 및

<신 설>

제15조(분쟁조정 신청)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조정) ① 제15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분쟁조
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수

제102조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
명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분쟁조정 신청) -----

--- 별지 제5호서식의 -----

-----.

제18조(분쟁의 조정) ① -----

별지 제6호서식-----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19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②
(생 략)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 참고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 참고인 등이 조정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조정종결) ① (생 략)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분쟁조정 종결(거부·중지)통보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

----- 별지 제7호서식-----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21조(조정종결)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10호서식-----

제24조(감사 요청) ① -----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날인된 별지 제9호 서식의 감사 요청서 및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요청인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 별지 제11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②·③ (현행과 같음)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